

선거관리규정 개정 심의(안)

1. 개정 사유

- 2020년도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해 정기총회 개최가 제한되어 서면총회로 대체한 바 있었고 선거도 중단되어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재선거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성원이 되지 못해 차기 정기총회까지 미루어진 바 있었음.
- 비대면 선거에 대한 제반 규정이 불비되어 있어 관련 문제 해소가 제한되었고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서면투표 등 비대면 선거도 가능토록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 - ※ 법인등기변경 시 공증인을 통해 회의록을 인증하여야 하는 의무를 서울시를 통해 법무부에 건의하여 제외대상으로 승인 받음(2020.07.23)

2. 주요 내용

- 서면투표 등 비대면 선거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투표에 소요되는 기간, 선거방법, 절차 등을 규정함
-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사에서 선관위에 이의제기, 개선건의 하였던 사항과 선관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함

3. 신·구 대조표: 붙임

4. 조치 계획

- 선관위 1차 심의 → 의견수렴 공고(12.4~12.11) → 선관위 2차 심의(12.15) → 이사회 상정(12.16)

선거관리규정 개정(안) 신·구 대조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4조(선거원칙) ①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 ② 조합원은 소속 임·직원에 한하여 대리투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투표한 것으로 본다.	제4조(선거원칙) ①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 ② 직접투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. 1. 조합원사의 대표가 투표한 경우(정비) 2. 조합원 소속 임·직원에 한하여 대리투표한 경우(정비) 3. 정관 제21조에 따라 총회를 서면으로 결의하기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대면 서면투표 절차로 하는 경우(신설)
사유: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성원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거나 비대면 등 선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투표가 필요한 경우, 정관 제21조에 따라 서면결의를 통해 서면 투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※ 법인등기 변경 시 의사록 공증대상이었으나 대상제외 추진 결과 2020.07.23.부로 제외되어 공증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되는 등 법인등기 변경 요건이 완화되었음을 고려	
제 6 조(선거권) 선거인명부 확정일 당시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.	제 6 조(선거권) 선거인명부 확정일 당시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. 다만, <u>투표 전에 사업등록취소, 폐업, 조합원 탈퇴·자격상실 등 자격변동이 된 조합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.</u> (보완)
사유: 조합원이 아닌 자의 선거권 제한 등을 명확히 함	
제 9 조(피선거권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 1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. 단, 과실범은 예외로 한다. 2. 이 규정위반으로 당선무효 된 자. 3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·미성년자. 4. 파산선고를 받은 자	제 9 조(피선거권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. 단, 과실범은 예외로 한다. 2. 이 규정위반으로 당선무효 된 자. 3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·미성년자. 4. 파산선고를 받은 자 5. <u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자(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포함).</u> (신설)
사유: 임원의 도덕성 강화	
(신 설)	제 13조의 2(권한)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위해 직권으로 <u>조사, 검색, 의뢰, 수집, 청문 등을 하여 조치할 수 있다.</u> (신설)
사유: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의 역할 강화를 위해 근거 마련	

변경 전	변경 후
제 14 조(선거기간) 선거기간은 20일로 한다.	제 14 조(선거기간) ① 선거기간은 20일로 한다. ② <u>서면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신·수신 등을 위해 12일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 ③ <u>투표용지 발·수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선거기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(신설)</u>
사유: 서면투표 시 투표용지 우편 발·수신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12일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투표용지 발·수신 기간으로 인해 선거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거기간 20일 외의 투표용지 발·수신 기간은 선거기간에서 제외함	
제 15 조(선거일)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- 임기만료 전 ② 보궐선거에 의한 선거일 - 정관 제11조 준용 ③ <u>재선거에 의한 선거일-재선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</u>	제 15 조(선거일)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- 임기만료 전 ② 보궐선거에 의한 선거일 - 정관 제11조 준용 ③ <u>재선거에 의한 선거일- 선관위에서 재선거 결정 후 총회를 개최하는 날(보완)</u>
사유: 선거는 총회에서 하여야 하며 총회소집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, 이사회 등에서 할 수 있고 선관위는 총회소집 기구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완	
제 16 조(명부작성)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관위는 선거일 전 1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이름·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	제 16 조(명부작성)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. <u>다만, 서면결의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이 경과 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. (보완)</u>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이름·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사유: 서면결의 시 선거기간이 달라져 명부작성 일자도 달라지는 점을 고려 명부작성 일정이 달라지지 않게 보완함	
제 17 조(명부열람) 선거인 명부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의 편의와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 및 교부할 수 있다	제 17 조(명부열람) 선거인 명부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의 편의와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 <u>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요구 시에는 교부할 수 있다.(보완)</u>
사유: 비대면으로도 명부를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	

변경 전	변경 후
제 19 조(명부의 확정과 효력)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5일 전에 확정되며,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.	제 19 조(명부의 확정과 효력)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<u>3일 전에 확정되며</u> ,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. <u>다만, 선거일 전에 자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은 제17조와 같다.(보완)</u>
사유: 명부확정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자격변동을 최소화하고 관련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알려 선거인명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	
제 20 조(후보자 등록) 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 ② 입후보자 등록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1. 입후보자등록신청서 2. 이력서 3. 조합회비 등 완납증명서 1부 4. 소견서	제 20 조(후보자 등록) 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<u>마감일 당일 18:00까지 할 수 있다.(보완)</u> ② 입후보자 등록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<u>공정성을 위해 선관위에서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(보완)</u> 1. 입후보자등록신청서(소정양식) - 필수(보완) 2. 이력서(소정양식) - 필수(보완) 3. 공약 및 소견서(소정양식) - 필수(보완) 4. <u>개인정보 제공동의서(소정양식) - 선택(신설)</u> 5. 조합회비 등 완납증명서 1부(조합 발행 - 필수(보완))
사유: 정규근무시간 외에 입후보자 등록 여부 확인은 현실상 제한되고 있어 보완함 제출서류 양식 통일,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근거 마련, 기타 조문 정비	
제 24 조(입후보등록금) ① 입후보자 등록금은 선거사무비를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. ② <u>기 납부된 등록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선거사무비로 사용한다.</u> ③ 선거사무비 부족분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잉여금은 조합에 기부하여야 한다.	제 24 조(입후보등록금) ① 입후보자 등록금은 선거사무비를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. ② 기 납부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사무비로 사용한다. <u>다만, 선거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중단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입후보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.(보완)</u> ③ 선거사무비 부족분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잉여금은 조합에 기부하여야 한다.
사유: 입후보등록금 반환 사유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	

변경 전	변경 후
제 25 조(선거운동 기간) 선거운동은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.	제 25 조(선거운동 기간) ① 선거운동은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<u>서면투표일 경우에는 선거개시일로부터 19일의 기간까지 할 수 있으나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할 수 있다(신설)</u>
사유: 기존 선거운동 기간과 서면투표에 의한 선거운동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고자 함	
(신설)	제26조의 1(후보자의 정보제공 의무). <u>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, 공약 및 소견서 등의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
사유: 선관위에서의 입후보자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함.	
제 27 조(기부 받는 행위 등의 금지) ① 후보등록자는 일체의 <u>향응·기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② 선거권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기부행위 등을 요구 및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 27 조(이익제공 행위 등의 금지) ① 입후보등록자는 <u>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일체의 향응·기부 등의 행위 및 이를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 (보완)</u> ② 선거권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기부행위 등을 요구 및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.
사유: 향응·기부 등의 행위 외에 약속하는 행위까지 제한하고 이익제공 대상을 조합원에서 선관위 및 조합 직원 등 관련자까지 확대함	
(신 설)	제 27 조의 1(선거운동 금지 행위) ① <u>선거운동으로 발생하는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호의 행위는 금지한다.</u> 1. 허위사실 유포 2.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사실의 유포 3. 개인신상 등의 정보를 이용한 비방 4. 비속어 등 부적절한 용어를 이용한 비방 ② <u>선거운동 금지행위는 선거권자, 피선거권자, 중립 의무자에게 적용한다.</u> ③ <u>제1항의 사유로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선관위에서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.</u> ④ <u>선거운동 금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한한다.</u>
사유: 부적절한 선거운동으로 조합원 간의 분열, 후유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, 대상자, 범위, 조치자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	

변경 전	변경 후
제 28 조(투표방법)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.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	제 28 조(투표방법) ① <u>투표는 선관위에서 정한 용지에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방법으로 한다. (보완)</u>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
사유: 투표 및 기표방법을 명확히 하고, 서면투표 등을 고려하여 투표와 기표하는 방법을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	
제 29 조(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기재순서)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·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② 후보자의 기재순서는 '가나다' 순서로 한다.	제 29 조(투표용지상의 후보자의 기재순서)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·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② 후보자의 기재순서는 <u>후보자 성명의 '가나다'</u> 순서로 한다.(정비)
사유: 후보자 기재순서를 명확히 하고자 함	
제 32 조(무효투표)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. 1.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. 어느 난에도 표기하지 아니한 것 3. <u>2 이상의 표기를 한 것</u> 4. 기타 선관위의 결정으로 무효로 결정된 것	제 32 조(무효투표)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. 1.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. 어느 난에도 표기하지 아니한 것 3. <u>2 이상의 표기를 한 것. 다만,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(보완)</u> 4. 기타 선관위의 결정으로 무효로 결정된 것
사유: 감사, 부이사장, 이사 등 2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다수인 선출과 서면투표 시 등의 무효투표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함	
제 33 조(당선인의 결정·공고) ① 2인 이상 경선 시에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(2017.01.20.) ②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. 다만 재투표 후에도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로서 당선인을 결정한다. ③ 1인 후보 시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	제 33 조(당선인의 결정·공고) ① 2인 이상 경선 시에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(2017.01.20.) ②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. 다만 재투표 후에도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로서 당선인을 결정한다. ③ 1인 후보 시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변경 전	변경 후
	④ 당선인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 공포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공포 또는 공고함으로써 당선 효력이 발생한다.(신설)
사유: 임원의 임기 기산일 등을 고려 당선인 결정 일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당선 효력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자 함	
제 40 조(증거조사)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	제 40 조(증거조사)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<u>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(보완)</u>
사유: 증거조사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	
제 41 조(재선거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. 1.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한 때 2.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3.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당선의 효력이 무효로 된 때 4. <u>기타 재선거의 사유가 발생 한 때</u>	제 41 조(재선거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. 1.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한 때 2. <u>천재지변,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등으로 총회 개최가 불가하여 선거가 중단된 때(신설)</u> 3. <u>성원부족 등으로 총회가 미성립된 때(신설)</u> 4.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.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당선의 효력이 무효로 된 때 6. <u>기타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한 때 (보완)</u>
사유: 재선거 사유를 보완하여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	
(신 설)	제12장 1 서면투표 제 조(투표용지 발송) ① <u>선관위에서는 제14조 제1항의 선거기간 종료에 맞추어 조합원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자, 등기번호 등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선관위에서는 조합원이 투표 후 투표용지를 조합에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u> ④ <u>선관위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라 조합원이 등록한 주사무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 조합원이 다른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.</u>

변경 전	변경 후
(신 설)	<u>제 조(투표지 제출 방법)</u> ① <u>투표지를 우편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제공한 우편 봉투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편물은 반드시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</u> ② <u>투표 후 용지를 선관위에 직접 제출방법은 제1항과 같다.</u> <u>제 조(투표지 수령)</u> ① <u>투표지 수령은 우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일 전일 18:00까지 수령할 수 있다. 다만, 투표권자가 투표지를 선관위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의 단서의 우편물은 제출대장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자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한다.</u> ③ <u>천재지변, 총회일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우편물 수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우편물 수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<u>제 조(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)</u> ① <u>선관위는 수령한 투표 관련 우편물을 개봉일 까지 밀봉된 함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</u> ② <u>투표 관련 우편물은 개표일까지 일체 개봉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.</u> <u>제 조(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)</u> ① <u>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함 및 우편물 개봉은 개표일에 선관위에서 일제히 개봉하며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.</u> ② <u>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 시에는 각 조합원의 투표 내용을 참석자가 알 수 있도록 개봉해서는 아니되며 투표용지에 조합원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서도 아니 된다.</u>
사유: 비대면 서면투표에 필요한 투표용지 발송·수령·보관·개봉, 개표, 투표기간 외의 우편물의 처리 등의 절차규정과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여 <u>서면투표에 대비하고자 함</u>	

변경 전	변경 후
(신 설)	<u>제 조(개표)</u> ① <u>개표관리는 선관위에서 하며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.</u> ② <u>개표는 각 투표지별 유효투표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 후 투표수를 확인한다. 다만 2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.</u> ③ <u>입후보자는 개표 완료된 투표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</u> <u>제 조(수령기간이 경과된 투표지에 대한 처리)</u> ① <u>선관위에서 정한 수령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우편물은 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무효처리 한다.</u> ② <u>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종료 후 일괄 폐기한다.</u> <u>제 조(금지행위)</u> ① <u>조합원은 서면투표를 직접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효처리한다.</u> ② <u>서면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<u>제 조(준용규정) 선거인 명부, 후보자, 선거운동, 당선인,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9조, 제20조 내지 제24조, 제25조 내지 제27조의 1, 제33조 내지 제35조,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준용한다.</u>
사유: 비대면 서면투표에 필요한 투표용지 발송·수령·보관·개봉, 개표, 투표기간 외의 우편물의 처리 등의 절차규정과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여 <u>서면투표에 대비</u>하고자 함	

변경 전	변경 후
제 43 조(벌칙) ① 제3조 위반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조합직원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을 받는다. ② 제25조 내지 제26조의 <u>규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자는 1차 경고, 2차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다.</u> ③ 제2항의 사유로 등록이 <u>취소된 자는 3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.</u> ④ 제27조의 규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자는 6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등록된 후보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.	제 43 조(벌칙) ① 제3조 위반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조합직원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을 받는다. ② 제25조, 제26조, 제27조1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<u>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각호와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.(보완)</u> 1. 1차 경고(정비) 2. 2차 경고를 받는 후보자는 등록 무효, 선거권자는 선거권 정지 1년, 선관위 및 관련 직무자는 관련 직무 해지(강화) ③ 제2항의 사유로 등록이 <u>무효된</u> 자는 4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<u>선거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선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(보완)</u> ④ 제27조 및 제13장의 제50조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자는 6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등록된 후보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.(보완)
사유: 제28조 선거운동 금지 사항 신설에 따른 처분규정 보완 및 선거권자와 중립 의무자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. 피선거권자의 권한 상실 기간에 대한 실효성을 고려하여 4년으로 변경함(처분이 3년인 경우 다음 선거에도 제약받지 않게 될 수 있음을 고려) 서면투표에 따른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분 규정을 명확히 함	
	부 칙(2020. 12. 00) 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